

[붙임1]

대학혁신지원사업 2주기 2차년도 시행계획
연구중심학과 및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사업



미래융합연구원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기술 선도대학 도약을 위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 필요
-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 지속 확보를 위한 우수 인재 확보 필요
- 창의성을 바탕으로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원 학과 선정 및 지원
- 세계 수준의 인프라 확보와 대·내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적 인재양성 필요
- 미래지향적 교육가치 창출과 세계 수준의 창의적 지식공동체 구축 필요

2. 목표

- 창조적 사고로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인재 양성
-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융합 인재양성 체계 구축
- 우수 연구인재 양성 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한 미래의 연구역량 확보
- 교육·연구·훈련의 유연성·개방성 제고를 통한 연구성과 확대
- ‘능동·혁신·헌신’인재양성을 통한 선도·성장·도약의 기반 조성
- 학과 주도적으로 응용·실용적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 마련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3. 1. ~ 2024. 2. 29.(2주기 2차년도)

※ 2주기 사업기간 : 2022. 3. 1. ~ 2025. 2. 28. (3개년)

나. 지원 내용

- 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해외연수비 편성 불가
- ②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지원
- ③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
- ④ 연구활동 특성화 장학금 : 연구비 2% 이내 편성 (1인 지급 한도 1백만원)

다. 사업 결과 보고

- 연구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진흥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대학원 학생과 교수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실적물 등을 산출

※ 연구실적물

- ① 우리 대학 업적평가시스템에 등록되는 연구업적만 해당됨
- ② **대학원생이 저자로 참여하고, 해당 사업으로 지원기관 표기된 학술논문 최소 1편 이상 제출**
- ③ 연구업적 사사문구 등은 선정 팀에 별도 통보

라. 기대효과

【연구중심학과 지원사업】

- ① 주도적 응용·실용적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 마련
- ②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한 수업 연계로 교육과 연구의 탄력성 제고

③ 연구자(학생)기반 교육·연구 지원으로 자율성 향상과 산업수요형 인재 양성

④ 우리대학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글로벌대학의 기반 마련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사업】

① 학제 간 협업과 공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학문 생태계 조성

② 국가경쟁력 지속 확보를 위한 우수 인재 연구역량 향상 및 융합연구경쟁력 강화

③ 글로벌 기술 선도대학 도약을 위한 우수 연구인력 양성

④ 복합문제 해결능력, 협업 기술, 직무역량 안전성을 갖춘 인재 양성

4. 신청 대상 및 선정 절차

가. **【연구중심학과 지원사업】** 신청 대상 : 일반대학원 소속 학과 및 전공

나. **【학제간 융합연구팀 지원사업】** 신청 대상 :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및 전공, 연구소(부설, 일반 등)

※ 융합연구팀 구성 ① 2개 이상의 학부, 학과 및 전공

② 1개 이상 학부, 학과 및 전공과 1개 이상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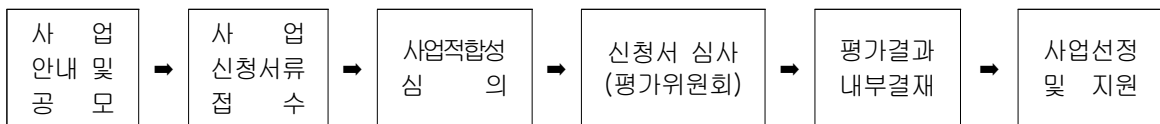
다. 신청자격 제한 : 연구기간에 ① 퇴직 예정인 자 ② 징계 중인 자

※ 단, 호봉승급심사에서 탈락하여 징계 조치된 경우는 예외

※ 2년 연속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라.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사업 적합성 심의 : 정부지원사업 유사·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위원회

■ 사업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붙임3. 참조)	제출기한
1. 사업신청서 1부(서식1-1 또는 서식 1-2) 2. 예산활용계획서(서식2-1) 및 장비(물품) 활용 계획서(서식2-2) 1부 3. 연구업적 제출 계획서 1부(서식3)	2023. 4. 14(금)

■ 평가방법

○ 심사 : 사업신청서 내용을 통해 평가

① 사업목적 부합성

② 연구분야 차별성과 목표 설정의 적절성

③ 사업계획의 정합성과 운영실적

④ 학부, 학과 및 전공, 연구소 실적 등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① 구성 : 위원장 1명, 위원 5명 이내, 간사 1명
 - ② 평가 :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점수의 평균
- 평가 총점의 산출(총점 100점) = 사업신청서 점수(100점)

■ 선정평가 지표

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목적 부합성 (20점)	프로그램 내용의 사업목적 부합성	20
차별성/적절성 (20점)	교육 연구분야 차별성과 목표 설정의 적절성(실현 계획 등)	20
사업성과 부분 (20점)	계획의 정합성과 완성도	20
학과 및 전공 실적 또는 융합연구팀 실적 (40점)	참여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대학원생 참여)	20
	참여 전임교원 1인당 대학원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참여도	15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5
가산점 (최대 10점)	외국인 대학원생 참여	5
	「학부생 연구트랙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원생	5

5.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규모

- 가. 선정 :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 결과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내용을 반영하여 지원
연구중심학과 및 융합연구팀 선정
- 나. 연구비 지원 규모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금액을 감안하여 연구기관별 지원액을 결정
 - ① 이공 계열 : 최대 1.5억원 이내
 - ②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 최소 2천만원 이상

6.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2023. 3. 29(수) ~ 2023. 4. 14(금)	· 공모 및 신청서 접수	
2023. 5월	· 사업적합성 심의	전략기획팀 (직무분장규정 제4조 참조)
2023. 6월 ~ 7월	· 선정 심사	연구분야 사업비 예산 확정 후, 선정
2023. 7월 ~ 2024. 2월	· 선정 학과(전공) 및 융합연구팀 발표 및 지원	결과보고서 제출 별도 공문 안내
2024. 1월 ~ 2월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별첨】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편성 지침

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및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1) 신청범위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비: 전공·비전공·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 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정책연구비, 강의료, 원고료, 교육학술활동비 또는 실험실습비 등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

2)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

3) 수당성 경비 신청기준

가) 사업 연계 특강료(비정규 교과목 강의 포함)

구분			1인당 상한액
			강좌당
내부			250,000원
외부	특A급	· 세계적 저명인사	1,000,000원
	A급	· 국내 저명인사 및 권위자 · 타 대학 총장, 전임 총장 · 기업 대표이사	700,000원
	B급	· 해당분야 전문가 · 타대학 교원 · 기업 임직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500,000원

※ 내부 교원의 경우 정규 교과목 수업시간 내 특강은 불가(단,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원 본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이중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명사초청 방식의 세미나 등)

※ 특별 처우가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팀과 협의 하에 초과 지급 가능

※ 특강, 발표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시 **본교 정규 원격수업 지침**에 준하여 운영함
(관련근거 : 학사팀-4706(2022.03.02.) “2022-1학기 개강에 따른 학사행정 및 면학분위기 조성 협조 요청”)

<원격수업 지침>

가) 사전 녹화된 자체 제작 동영상 강의

-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강의영상 재생시간이 수업시수당 25분 이상이어야 함
- 외부 콘텐츠 사용 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수업 보조 자료로만 활용 가능
- 강의영상 포함 실 수업 시간에 준하는 콘텐츠 외 활동(과제, 퀴즈, 토론 등) 및 수강생 소통 필수

나) 실시간 온라인강의

- 배정 시간표 및 강의시간 준수
- 콘텐츠 외 활동(과제, 퀴즈, 질의응답, 토론, 피드백 등)을 통한 수강생 소통 필수

나) 교육·연구 프로그램 관련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구분	직위(급)		연구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연구책임자	(책임수당 추가 신청 가능)		500	700	1,000
연구원	전임교원		1,000	1,500	2,000
	특별교원		700	1,000	1,500
	정규직원		700	1,000	1,500
	박사(과정)		700	1,000	1,500
	석사		500	700	1,000
연구보조원	직원	정규직, 계약직	300	500	700
	박사(과정)		500	700	1,000
	석사(과정), 학사		300	500	700
	학사과정		200	300	500

- 1과제 당 총액은 수당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20,000천원 이내로 함
- 1과제 당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3개월을 초과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기간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함
- 동일 연구원(연구보조원 포함)이 기간 중 2가지 이상의 대학혁신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 1과제의 연구비는 기준액의 100%, 나머지 과제의 연구비는 기준액의 50%를 지급함. 개인당 연구비 수여 과제는 최대 3과제로 제한함
- 1과제를 세부과제로 분리한 경우 1과제로 간주함
- 전임교원, 특별교원에는 교내·외를 모두 포함함

3) 자문비, 심사비

구분	1인당 상한액	
	시간당	1일 최대
자문비	200,000원	400,000원
심사비	250,000원	500,000원

4) 발표비 및 토론비

구분	1인당 상한액	
	발표비	토론비(사회자 포함)
국제학술대회	500,000원	200,000원
국내학술대회	300,000원	200,000원

<주요 신청제한 항목>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국제교육센터(어학원), 평생교육원 등 부설교육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비 신청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경비,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세부 프로그램 내 LINC+, BK21+, 혁신공유대학사업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으나 각 품목의 재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지원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②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가.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1) 신청범위 : 교육·연구목적으로 활용되는 실험·실습·시험·분석·계측·생산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리스·임차·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2) 예산 신청 시 해당 실험·실습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 목적, 용도, 설치 장소, 관련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

③ 교육·연구 환경개선비(시설비)

가.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 1) 신청범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 강의실, 실험·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등 환경개선비
 - 강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비
 - 교육·연구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 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 시스템 구축 용역비 또는 시스템 관련 기자재 구입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주요 신청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 투자, 토지매입 투자 경비
 - ※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신청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④ 장학금

가. 장학금

1) 신청대상 :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의 예산은 신청 불가

2) 지급방법 : 우리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 제3조 33항 특성화 장학금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8조 2항 9호

3) 신청범위

- 교내 장학금 지급 규정 제3조 33항에 따라 특성화 프로그램(멘토링, 서포터즈 등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교육·연구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이수한 경우 지급하는 특성화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중복지원 예외사항 중 사업 성격 및 학생 참여 교육·연구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장학금

<주요 신청제한 항목>

- 부적격자(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 지원금(ex.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 ※ 학자금 이중지원 예외사항(한국장학재단)
 - ① 생활비
 - ②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 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제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③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